

가정용 미납 수도 요금 징수 및 공급 중단 정책

본 체납 가정용 수도 요금 징수 및 공급 중단 정책(정책)은 가정용 고지, 요금 평가, 수도 공급 중단을 포함하여 페탈루마 (시 당국)의 체납 계좌 조치 징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제 116900조 및 SB 998, 상수도 차단 보호법(Water Shutoff Protection Act)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11 English Street in Petaluma, California에 위치한 시 당국의 재무과(City Finance Department) 또는 페탈루마시 웹사이트 www.cityofpetaluma.org에 있는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국(Public Works and Utilities City Departmen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상수도 요금 고지서, 연체료 고지서, 수도 공급 중단 서면 고지서 및 종료 고지서에 본 정책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본 정책의 조건에 따라 체납에 의한 수도 공급 중단 방지를 위해 선택 항목에 대해 문의하려면 11 English Street in Petaluma, California에 소재한 시 당국의 서비스과(Commercial Services Department) 직원에게 (707) 778-4350번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정용 상수도 요금 납부: 모든 요금은 고지서와 함께 재무과에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의 날짜로부터 30일 경과시 연체됩니다. 체납 수수료는 요금 및 요금표에 명시된 대로 연체된 요금에 적용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시 당국은 당년 기준 1회 연체료 벌금을 면제합니다.

고지서 잔액이 30달러 미만인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추가 징수 조치가 발생하는 일 없이 다음 청구 기간으로 이월되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공급 중단 기간 및 알림: 시 당국은 계좌가 60일 동안 연체되지 않는 이상, 체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시 당국은 체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공급을 중단하기 7일(영업일 기준) 전에 서면 고지서를 통해 해당 계좌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납부 연체 및 임박한 서비스 공급 중단에 대한 서면 고지서는 수도물이 공급되는 거주지의 이용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이용자의 주소가 가정용 수도물이 공급되는 소유지의 주소가 아닌 경우에도, 고지서는

“입주자” 앞으로 수도가 공급되는 소유지의 주소로 발송될 것입니다. 납부 연체 및 임박한 서비스 공급 중단에 대한 서면 고지서가 우편을 통해 배달 불가 상태로 반송되거나 시에서 이용자 또는 거주지에 사는 성인과 전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시 당국은 납부 연체와 임박 서비스 공급 중단 고지서 및 본 정책을 체납자의 주소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납부 연체 및 임박 공급 중단에 대한 서면 고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이용자의 이름 및 주소
- 기한이 지난 금액
-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또는 납부 마련이 필요한 날짜
- 대체 납부 방식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고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항소 절차에 대한 설명
- 지연된 납입 또는 상환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수도를 다시 공급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시 당국의 전화 번호 및 서면 징수 정책 이용

이 고지서는 개별적으로 계량된 주택의 거주자 및 중앙통제형 수도 계량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다세대 단지의 입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별 계량형 주택 세입자/입주자 - 해당 주소에서 발생하는 수도 요금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한, 체납 계좌에 대한 납부 의무 없이 시 당국의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체 계좌의 체납액이 이전 계좌 소유자의 책임으로 남아 있게 하려면 세입자/입주자는 임대 계약 또는 임대료 납부 증명서로 임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중앙통제형 수도 계량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세대 단지의 세입자/입주자 - 중앙통제형 수도 계량기를 통해 해당 주소에서 발생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한, 체납 계좌에 대한 납부 의무 없이 시 당국의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명 이상의 입주자가 시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추후의 사용료에 대해 책임을 질 의지와 능력이 있거나 또는 수돗물 공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에게 선택적으로 수도 공급을 종료하기 위해 시 당국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경우 시 당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3. 대체 납부 마련: 시 당국은 이용자가 납부 방식(Payment Plan)으로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수돗물 이용 이용자는 전화 또는 시 당국의 서비스과(City' s Commercial Services Department) 창구를 통해 재무과에 대체 또는 할부 상환 일정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을 요청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용자 서비스 담당 직원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득

확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납부 방식에 따라 요금을 낼 때 추후 체납 요금에 대한 추가 대체 납부 마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납부 방식에 대한 요금 납부에 동의하고 준수할 경우, 수도 공급 중단이 방지되지만 최근 요금을 포함하여 모든 납부가 충족될 때까지 계좌는 연체 상태(원래 납부일로 계산)로 유지될 것입니다.

납부 방식 조건은 재무과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지만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체납 잔액과 함께 일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납부 방식 기간 동안에는 연체료 벌금이 중지될 것입니다.

4. 수돗물 공급 중단의 최후 고지: 가정용 수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당국은 이용자 소유지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수도 공급 중단 의사를 최후 고지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60일 이상 연체 요금에 대한 납부 방식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연체 요금 납부 방식이 적용되는 이용자가 최근 가정용 수도 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 공급 중단에 대한 최후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해당 시 당국에서 조사, 납부 마련 또는 검토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시 당국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는 체납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중단 기한: 모든 체납된 수도 요금 및 관련 수수료는 납부 연체 및 임박 수도 공급 중단 서면 고지서에 명시된 날짜의 업무 시간 전까지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명시된 날짜까지 요금을 납입할 수 없는 이용자는 본 정책의 제 3조에 설명된 대체 납입 약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납입 약정 요청은 중단 통지에 명시된 종료 날짜 이전에 접수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6. 수도 서비스 공급 중단: 시 당국에서는 수도 계량기를 잠그거나 차단해서 수도 공급을 끊을 예정입니다. 요금 및 수수료 목록표에 명시된 대로 계량기가 물리적으로 차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중단 통지는 이용자에게 수도관련 가정용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페탈루마 시나 해당 임원,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의 체납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 당국은 납입 불이행으로 인한 연간 주거서비스 중단 건수를 시 홈페이지와 국가수자원관리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7. 수도 서비스 복구: 모든 연체된 요금 및 관련 요금은 서비스가 복구되기 전에 전액 납입되어야 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서비스 종료로 인한 모든 비용을 납입하면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재연결합니다. 정상 업무 시간(오전 8시~오후 4시 30분) 중 당일 서비스 복구를 원하는 경우 오후

2시까지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서비스 복구를 원하면 해당 도시의 요금 및 수수료 목록에 명시된 업무 시간 이후 요금이 부과됩니다. 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는 이용자가 업무 시간 이후 수수료를 통보받고도 업무 마감시 발생한 모든 체납 비용과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는 한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시 당국의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 당국 관련 요금 및 수수료 목록에 명시된 벌금 또는 추가 요금 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 수도 서비스 복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서비스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8. 반환금 처분 통지: 수도 서비스 또는 기타 요금에 대한 반환금은 해당 도시의 요금 및 수수료 목록에 명시된 요금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계좌에 반환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을 납부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처럼 그 계좌를 시 당국의 체납처리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시 당국은 알림, 전화, 메일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복구된 서비스 항목 및 계좌의 체납 상태를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 도시 당국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반환된 납입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모든 향후 납입액을 현금 또는 인증 펀드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이전의 수도 연결 중단 서비스에 대한 반환금: 이용자가 이전에 납입하지 않은 수도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납입 수단으로 결제상 양도불능 수표 또는 분쟁 신용카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연결 중단 서비스로 인해 양도불능 수표를 납입하거나 허위 신용 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체납으로 인해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납입 수단으로 결제상 양도불능 수표 또는 분쟁 신용카드를 사용한 모든 이용자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향후 서비스 연결 중단을 복구하기 위해 현금 또는 인증 펀드를 납입해야 합니다.

10. 기타 구제책: 수도 서비스 중단 외에 시 당국은 기타 적용법에 따라 체납 수도 사용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 설정, 소송 또는 법적 조치, 또는 체납 징수에 회부하는 등의 형평성상 가능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시 당국의 승소로 법적 조치가 결정되면 시 당국은 변호사 비용 및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해 납입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1. 기타 이용자의 위반에 대한 수도 서비스 중단: 시 당국은 수도 서비스 중단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수도 서비스 체납입 이외의 조례, 규칙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2. 고지서 검토 또는 이의 제기 요청: 이용자가 이용자의 수도 관련 고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공사업소장 또는 지정인의 수도서비스 중단 결정에 대해 항소권을 행사할 경우 항소가 보류 중인 동안 미지급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용자는 페탈루마(Petaluma)의 11 English Street, Petaluma, California 94952에 위치한 페탈루마 시(Petaluma City) 사무소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본 정책에 따른 고지서의 정확성 또는 기타 시 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중인 고지서 또는 서비스 중단의 최초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당국 재무 책임자 또는 그 지명자가 검토 또는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미 납입을 하였지만 이용자 계정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이용자는 납입을 입증하기 위해 납입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영수증, 취소된 수표 또는 기타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분쟁이 재무과 담당책임자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페탈루마 시법 제1.14.090조(B)에 따라 청문회 전에 항소심 선고일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13. 번역: 캘리포니아 민법 1632조에 수록된 언어로 번역된 문서는 재무과 또는 시 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번역은 당사 사무소 또는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Please visit our office or website for a translation of this Policy.

Visite nuestra oficina o sitio web para obtener una traducción de este política.

如欲获取政策的译文·请访问我们的办公室或网站。

Mangyaring bisitahin ang aming opisina o website para sa isang pagsasalín ng Polisiyang ito.

Vui lòng đến văn phòng hoặc vào trang web của chúng tôi để xem bản dịch của Chính sách này.

이 정책에 대한 번역은 저희 사무실이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본 정책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서면 통지는 시 당국의 재무과(City Finance Department, California, Petaluma, 94952) 또는 시 당국의 웹 사이트에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기타 서비스 지역 거주자의 10% 이상의 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됩니다.